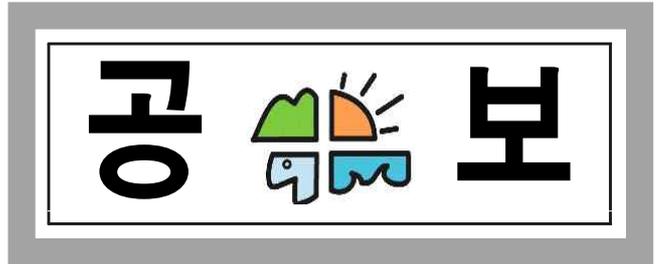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1032호 2016년 11월 25일(금)

공 고

- 속초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청호3지구 소로3-330호선
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계획 공람·공고 2
-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4

속초시 공고 제2016 - 799호

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청호3지구
소로3-33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계획

공람 · 공고

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청호3지구 소로3-33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규정에 따라 대상물건(토지 및 물건 등)에 대한 보상계획을 해당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공람 · 공고합니다.

2016. 11. 25.

속 초 시 장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청호3지구 소로3-33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
나. 위 치 : 속초시 청호동 444-62 번지 일원

< 편 입 지 번 >

※ 속초시 청호동 444-62, -41, -63, -148(속초시), -166(속초시) 번지

- 다. 내 용 : 도시계획도로 개설(B=6m, L=45m) / ※ I' PARK 신축부지 ~ 청호성당 구간
라. 기 간 : 2017. 4월 ~ 2017. 7월(4개월간 예정)

2. 열람기간 : 2016. 11. 25. ~ 2016. 12. 9.(15일간)

3. 열람장소 :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(속초시 중앙로 183)

4. 보상계획

- 가. 시 기 : 감정평가 이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별도 통지
나. 방법 및 절차

◆ 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” 68조제1항 규정에 따라 3인 (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)의 감정평가업자(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)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액으로 결정하여 지급합니다.

◆ “동법” 제68조제2항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속초시 건축디자인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보상절차 :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⇒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⇒ 보상협의 ⇒ 등기이전 및 보상금 지급(협의시) ⇒ 수용재결(협의 불성립시) ⇒ 보상금 지급(공탁포함)

5. 의견제출 : 이 공고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나 개인은 2016. 12.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
나.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디자인과 도시재생팀(☎ 033-639-2773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

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 및 『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11월 25일

속 초 시 장

1. 조 례 명 : 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

2. 제안이유

- 관련법에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·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
- 관련법에 장난감용 꽃볼놀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불꽃놀이로 명시
- 국민여가캠핑장내 샤워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 없음
- 관련법과 상이한 제명 및 문구 변경과 사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해수욕장 관리·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를 “일부”로 개정
- 제목 “(불꽃놀이 금지)”를 “(꽃볼놀이 금지)”로 하고, “불꽃놀이”를 “꽃볼놀이”로 개정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**2016년 12월 15일까지**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 : 관광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 제출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 24826 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, 속초시청)
관광과(전화 : 033-639-2027, FAX : 033-639-2384)

라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6. 기 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관광과 관광시설관리팀(033-639-202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단서 중 “일부 또는 전부”를 “일부”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불꽃놀이 금지)”를 “(꽃불놀이 금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 2항 중 “불꽃놀이”를 각각 “꽃불놀이”로 한다.

별표 1,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관리·운영) ① 해수욕장은 시가 직접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관리·운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15조(불꽃놀이 금지)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행사 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3조(관리·운영) ①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일부 ----- ----- 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꽃불놀이 금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꽃불놀이 ----- ----- 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꽃불놀이 ----- ----- ----- 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[별표 1] 해수욕장시설 사용료(제10조 관련)

(단위 : 원)

시 설 명	구 분	기 준	사 용 료	
샤 위 장	어 른	1회	2,000	
	군인, 청소년	1회	1,500	
	어린이	1회	1,000	
물 품 보 관 소	보관용 물품	1일	2,000	
파 라 슬		1개 / 1회	10,000	
튜 브	대형	1개 / 1회	10,000	
	중형		7,000	
	소형		5,000	
주 차 장	이륜차	당일(8시간)	1,000	
		체류(8시간~24시간)	2,000	
	경 차	당일(8시간)	1,500	
		체류(8시간~24시간)	3,000	
승용차, 소형차 (15인승 이하 승합차 ,1톤이하 화물차)	당일(8시간)	3,000		
	체류(8시간~24시간)	6,000		
중·대형차 (16인승 이상 승합차 ,1톤초과 화물차)	당일(8시간)	6,000		
	체류(8시간~24시간)	12,000		
국민여가 캠 핑 장	제1캠핑장 (오토캠핑장)	1개소/1일/1차량	성수기	비수기
			40,000	30,000
	제2캠핑장	1개소/1일	20,000	
	제2캠핑장 야영장 소형(5인이하) 중형(6~10인미만) 대형(10인이상)	1일	4,000	
			6,000	
8,000				
샤워장 (코인온수샤워기)	1회 이용	성수기	비수기	
		최초 1회 1,000원 3분 이용 *추가 500원 1분 30초 이용	1회 500원 4분 이용	

<비 고>

1. 위 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.

가. 어른 : 만 19세 이상의 사람

나. 군인 : 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한 사람으로 단기하사 이하의 사람(전투경찰, 의무경찰, 경비교도, 공익 근무요원 포함)

다. 청소년 :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

라. 어린이 : 만 7세 이상 만 12세 미만인 사람

마. 제1캠핑장란의 성수기 : 여름 피서철(7.1~8.31), 단풍철(10.1~10.30)

바. 제1캠핑장란의 비수기 : 성수기 이외의 기간

사. 샤워장의 성수기 : 해수욕장 개장기간

아. 샤워장의 비수기 : 해수욕장 개장이외의 기간

2. 제1캠핑장 이용차량이 캐라반인 경우 전기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.

(별지 제2호 서식)

장난감용 꽃볼놀이 사용 허가증(제15조 관련)

제 호

장난감용 꽃볼놀이 사용 허가증

- 성 명 :
- 주 소 :
- 수 량 :
- 인 원 :
- 연 락 처 :
- 사용장소 :
- 사용기간 : . . .부터까지
- 조 건 :

「속초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15조에 따라 장난감용 꽃볼놀이를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속 초 시 장 (직인)